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4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현황 및 그 개선 논의	7
3.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여성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9조의3(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여성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여성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u>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의2의 여성전용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제3호의2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여성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폭력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여성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현황 및 그 개선 논의

가. 성폭력범죄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제2조는 음행매개 등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음.¹⁾

1)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을 포함하고 있어,²⁾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음.

2)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 9. (생략)

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 성폭력범죄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제재도 적용받게 됨.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주요 제재로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공무원 등 각종 신분·자격의 결격, 시설의 운영중지·폐쇄, 각종 급여 제한 등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성폭력범죄자 대상 주요 제재 >

구 분	근거 법률	주요 내용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 등 성범죄로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취업제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등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 제공 불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등	성폭력범죄로 일정한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공무원 등의 법률상 신분·자격 취득 불가
운영중지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시설을 폐쇄
급여제한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성폭력범죄로 일정한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등의 대상에서 제외

□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모든
사람은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됨(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³⁾

-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刑)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범죄도 포함됨.

3)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
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 9의2. (생략)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 25. (생략)

취업제한기간은 법원의 선고에 따르는데, 그 기간상한은 10년이며 (제56조제2항),⁴⁾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 그 밖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함(제56조제1항).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며 아동·청소년의 이용 가능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의료기관 등도 포함됨 (제56조제1항 각 호).

- 이러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대상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데,⁵⁾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4)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현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

3.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가.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이용자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형벌의 경우처럼 보호법익,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임.
- 다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폭력범죄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취업제한이 부과될 필요가 있음.⁶⁾
- 개정안은 여성 전용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체육시설업에서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는 별다른 취업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식품접객업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가능한 반면,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게 됨.

6) 헌법재판소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舊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식품접객업 등에 있어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그 기간을 청소년보호법의 취업제한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여성 관련기관등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규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취업제한을 통한 각 시설 이용자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타당한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여성 관련 기관 등은 아직 개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참고하여야 함.

○ 개정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제2207740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74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74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관련 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도입은 성범죄예방의 필요성, 성범죄자의 재범가능성, 취업제한의 취지 및 실효성, 관련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현재 성인 대상 성범죄도 청소년 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만을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할 필요성, 개정안과 관련된 다른 법률안의 심사 경과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여성 관련기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
